

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제·개정으로 위원회 결정 사항의 변경사항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규칙」이 폐지되고 「부산광역시사하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」이 제정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관련 조항을 삭제함. (안 제3조제3호, 안 제3조제6호)
- 나. 「부산광역시사하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되고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함. (안 제3조제23호)
- 다. “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”을 결정사항에 추가하고자 함. (안 제3조 제26호)
- 라. 불합리한 문안 일부 수정(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 중복) (안 제9조)

3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

4. 검토사항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각종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,
- 불합리한 문안을 수정(안 제9조)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